##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u>25995</u> 제안연월일: 2023. 12. 번호 기 아 기 : 제거아기요

제 안 자: 행정안전위원장

##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대표 발의자	발의일	심 사 경 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2020.11.26.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21.2.17.)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회부 제38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1.4.20),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2.9.21.),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3.9.19.),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3.11.16.) 상정
	김승남의원	2021.7.13.	제393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 (22.2.14.)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회부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2.9.21.),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3.9.19.),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3.11.16.) 상정
	강병원의원	2023.7.25.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023.9.5.)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2 소위원회(23.9.19.),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3.11.16.) 상정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전체회의 (22.22.16.)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박성민의원 2022.8.22.		대체토론 및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회부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제2 소위원회(23.11.16.) 상정
윤준병의원	2023.1.2.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3.4.25.)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회부
이해식의원	2023.2.24.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제2 소위원회(23.11.16.) 상정
기성구이이	2023.3.29.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3.5.16.)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회부
김영주의원 2023.	2023.3.30.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제2 소위원회(23.11.16.) 상정
이만희의원	2023.7.11.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023.9.15.)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제2 소위원회(23.11.16.) 상정
이형석의원	2023.8.1.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 (23.11.9.)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회부
최기상의원	2023.9.26.	대세도본 및 립인점사제2소위전되 외무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제2 소위원회(23.11.16.) 상정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023.11.16.)는 위11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8차 행정안전위원회(2023.11.23.)는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11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 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가 마련 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다중운집인파사고 및 인공우주물체의 추락·충돌을 사회재난의 원인 유형으로 명시하고, 재난이나 각종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국가 등의 책무로 규정함.

시·도지사에게 재난 사태 선포 권한을 부여하고, 중앙 및 시·도재난 방송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하며,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등의 작성 주기를 명시하고 집행계획 등의 추진실적 제출·보고 의무를 신설함.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인 재난의 규모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 인명·재산의 피해 정도, 재난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피해구역의 범위를 고려하도록 명시함.

중앙행정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진하여야 하는 안전문화활동에 안전신고 활동 장려·지원을 포함하도록 하고, 주민뿐 아니라관련 기관·단체도 안전문화활동의 주체에 포함되도록 명시함.

법률 제 호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가목 중 "소행성·유성체 등"을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환경오염사고"를 "환경오염사고·다 중운집인파사고"로, "미세먼지 등으로"를 "미세먼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으로"로 한다.

제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의2.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의 선포에 관한 사항(시·군·구위원 회는 제외한다)

제12조제1항 중 "둘 수 있다"를 "두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역위원회에 시·도 또는 시·군·구 재난방송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지역재난방송협의회"라 한다)"를 "시·도위원회에 시·도 재난 방송협의회를 두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시·군·구위원회에 시·군·구 재난방송협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역재난방송협의회"

를 "시·도 재난방송협의회와 시·군·구 재난방송협의회"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국가의"를 "5년마다 국가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그"를 "5년마다 그"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그"를 "매년 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세부집행계획을"을 "매년 세부집행계획을"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따라 시·도의"를 "따라 매년 시·도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그"를 "매년 그"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따라 시·군·구의"를 "따라 매년 시·군·구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그"를 "매년 그"로 한다.

제25조의2를 제25조의4로 하고, 제3장에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집행계획 등 추진실적의 제출 및 보고) ①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전년도 집행계획의 추진실적 을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시·도 또는 시·군·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제외한다)은 제23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전년도 세부집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제출받은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추진실적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시·군·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

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제25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전년 도 시·군·구안전관리계획에 따른 그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5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전년도 시· 군·구안전관리계획의 추진실적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 적을 매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시·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제24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전년도 시·도안전관리계획에 따른 그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⑥ 시·도지사는 제24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전년도 시·도안전관 리계획의 추진실적 및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제2항·제6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 적을 점검하고 종합 분석·평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국무총 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8 그 밖에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추진실적 및 보고서 등의 작성·제출 시기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2제1항제2호 중 "제25조의2제1항제1호에"를 "제25조의4제1항 제1호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25조의2제4항에"를 "제25조의4

제4항에"로 한다.

제33조의3제1항제2호 중 "제25조의2제1항에"를 "제25조의4제1항에"로 한다.

제36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 전의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은"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이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에 대한 시·도위원회 심의의 생략 및 승인 등에 관하여는 제1항 단서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시·도지사"로, "중앙위원회"는 "시·도위원회"로본다.
- 제60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 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재난의 규모를 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
- 2. 재난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 3.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구역의 범위

제66조의4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주민이 참여"를 "주민과 관련 기관·단체가 참여"로 한다.

2의2.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신고 활동 장려ㆍ지원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도지사의 재난사태 선포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 및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3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	1
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	가
우(豪雨), 강풍, 풍랑, 해	
일(海溢), 대설, 한파, 낙	
뢰, 가뭄, 폭염, 지진, 황	
사(黃砂), 조류(藻類) 대	
발생, 조수(潮水), 화산활	
동, <u>소행성·유성체 등</u>	「우주개발 진흥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	법」에 따른
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	
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	나
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	
·화생방사고 · <u>환경오염</u>	<u>환경오염</u>
<u>사고</u> 등으로 인하여 발생	<u> 사고・다중운집인파사고</u> -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	추전염
병예방법」에 따른	가축
전염병의 확산, 「ㅁ	미세먼
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므	미세먼
지 등으로 인한 피히	H

<u>미세먼</u>
지, 「우주개발 진흥법」
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으로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② (생 략) <신 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 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제11조(지역위원회) ① 지역별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
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11조(지역위원회) ① -----

\_\_\_\_\_

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 라 한다) 소속으로 시·도 안 전관리위원회(이하 "시·도위 원회"라 한다)를 두고, 시장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 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시·군 ·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시 ·군·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2. (생략) <신설>

3. ~ 6. (생략)

② ~ ⑤ (생 략)

제12조(재난방송협의회) ① 재난 저에 관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중앙위원회에 중앙재난 방송협의회를 <u>둘 수 있다</u>.

② 지역 차원에서 재난에 대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

1. • 2. (현행과 같음)
2의2.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
의 선포에 관한 사항(시・군
• 구위원회는 제외한다)
•구위원회는 제외한다)
· 구위원회는 제외한다) 3. ~ 6. (현행과 같음)
· 구위원회는 제외한다)         3. ~ 6.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 구위원회는 제외한다)         3. ~ 6.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 구위원회는 제외한다)         3. ~ 6.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 구위원회는 제외한다)         3. ~ 6.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 구위원회는 제외한다)         3. ~ 6.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재난방송협의회) ①
· 구위원회는 제외한다)         3. ~ 6.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재난방송협의회) ①

및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수 있도록 지역위원회에 시·도 또는 시·군·구 재난방송 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지역 재난방송협의회"라 한다)를 둘수 있다.

③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하고, <u>지역재난방</u> 송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 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 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2조(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무총리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국</u> <u>가의</u>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국가안전 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 립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생략)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난 및 안

시·도위원회에 시
•도 재난방송협의회를 두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시・군・구
위원회에 시・군・구 재난방송
<u>협의회</u>
③
<u>시·도</u> 재
<u>난방송협의회와 시·군·구 재</u>
난방송협의회
제22조(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u>5</u>
<u>년마다 국가의</u>
② (현행과 같음)
③
5년마다 그
<del></del>

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작성한 후 국무총리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 ④ ~ ⑧ (생 략)

제23조(집행계획) ①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제22조제4항 에 따라 통보받은 국가안전관 리기본계획에 따라 그 소관 업 무에 관한 집행계획을 작성하 여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확정 한다.

- ② (생략)
- ③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 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2항 에 따라 통보받은 집행계획에 따라 세부집행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한 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 인을 받아 이를 확정하여야 한 다. 이 경우 그 재난관리책임 기관의 장이 공공기관이나 공 공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그 내 용을 지부 등 지방조직에 통보 하여야 한다.

제24조(시·도안전관리계획의 수 7

·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23조(집행계획) ①
<u>매년 그</u>
 ② (현행과 같음) ③
매년 세부집행계획을
,
· 제24조(시·도안전관리계획의 수

- 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2 조제4항에 따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 제23조제1항에 따른 집행계획에 따라 시·도의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계획(이하 "시·도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시·도지사에게통보하여야 한다.
- ② 시·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 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 관의 장은 그 소관 재난 및 안 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작 성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④ (생 략)

제25조(시・군・구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시·도지사는 제24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시·도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시·군·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이하 "시·군·구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의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

립) ①
<u>따라 매년 시·도</u>
<u>9</u>
②
<u>매년 그</u>
③・④ (현행과 같음)
1125조(시・군・구안전관리계획
의 수립) ①
<u>따라 매년 시·</u>
<u>군·구의</u>

다.

② 시·군·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그 소관 재난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제3장 안전관리계획 <신 설>

②
<u>매년 그</u>

③·④ (현행과 같음) 제3장 안전관리계획

제25조의2(집행계획 등 추진실적의 제출 및 보고) ① 관계 중의 장행정기관의 장은 제23조제1 항에 따라 확정된 전년도 집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 난관리책임기관의 장(시·도 또는 시·군·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 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 책임기관은 제외한다)은 제23 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전년도 세부집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 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제출받은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추진실적을 행정안 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③ 시·군·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제25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전년도 시·군·구안전관리계획에 따른 그 소관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5 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전년도 시·군·구안전관리계획의 추 진실적 및 제3항에 따라 제출 받은 추진실적을 매년 시·도 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 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 관은 제24조제3항에 따라 확정 된 전년도 시·도안전관리계획

에 따른 그 소관 재난 및 안전 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의 추진 <u>실적을 매년 시</u>·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도지사는 제24조제3항 에 따라 확정된 전년도 시·도 안전관리계획의 추진실적 및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제출받 은 추진실적을 매년 행정안전 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제2항ㆍ제6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종합 분 석 · 평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제1항부터 제7항까 지에 따른 추진실적 및 보고서 등의 작성·제출 시기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25조의4(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등) (현행 제25조의2와 같음)

한 평가 등) ① -----

제25조의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등) (생 략)

제33조의2(재난관리체계 등에 대 제33조의2(재난관리체계 등에 대 한 평가 등) ① 행정안전부장

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정
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 1. (생략)
- 2. 제2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실태
- 3. <u>제25조의2제4항에</u> 따른 안 전관리체계 및 안전관리규정
- 4. (생략)
- ② ~ ⑥ (생 략)
- 제33조의3(재난관리 실태 공시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제 3호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난관리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관할 지역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 1. (생략)
  - 2. <u>제25조의2제1항에</u> 따른 재난 예방조치 실적
  - 3. ~ 5. (생 략)
  - ②·③(생략)
- 제36조(재난사태 선포) ①·②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5조의4제1항제1호에
3. <u>제25조의4제4항에</u>
4.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33조의3(재난관리 실태 공시
<u> 등</u> ) ①
1. (현행과 같음)
2. <u>제25조의4제1항에</u>
3. ~ 5.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36조(재난사태 선포)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신 설>

③ (생략)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으로 인한 위험이 해소되었다고 인 정하는 경우 또는 재난이 추가 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없어진 경우에는 선포된 재난사태를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이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이경우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재난사태 선 포에 대한 시·도위원회 심의의 생략 및 승인 등에 관하여는 제1항 단서 및 제2항을 준용한 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은 "시·도지사"로, "중앙위원 회"는 "시·도위원회"로 본다.
-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 <u>⑥</u> <u>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u> <u>도지사는</u>-----

\_\_\_\_\_

\_\_\_\_\_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① (생 략)

<신 설>

② · ③ (생 략)

제66조의4(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 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안전문화활 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2. (생략) <신설>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재난의 규모를 정할 때에는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
  - 2. 재난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 3.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구역 의 범위
  - ③·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 과 같음)

제66조의4(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① -----

\_\_\_\_\_

\_\_\_\_\_

\_\_\_\_\_

\_\_\_\_\_

--.

1. • 2. (현행과 같음)

2의2.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3. ~ 7. (생략)

- ② (생략)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내 안전문화활동에 <u>주민이 참</u> 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⑤ (생 략)

위한	안전신고	활동	장려 •
지원			
3. ~ 7	. (현행과	같음)	
n (첨a	해고 가스)		

3 -				
			<u>주</u>	민과
관련	기관 •	단체가	참여-	
		_		

④·⑤ (현행과 같음)